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55호

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훈령

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5항제2호 중 "소자장비"를 "소자장비(자성 제거 장비)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"천공"을 "천공(구멍 뚫기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~	제18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	⑤
관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	
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	
치를 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용 <u>소자장비</u> 를 이용하여	2 소자장비(자성 제거 장
삭제	<u>用])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	6
관이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	
하는 경우, 제5항의 방법으로	
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	
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	2
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	
우 : 해당 부분을 마스킹, <u>천공</u>	<u>천공</u>
등으로 삭제	<u>(구멍 뚫기)</u>